

국무총리훈령 제582호

국회 서면질문서 처리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국회법」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으로 부터 서면질문서가 정부에 이송되어온 경우, 이에 대한 정부 답변서의 작성단위, 결재권자 및 결재과정 등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부답변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2. 답변서 작성요령

가. 작성단위

해당부처의 장이 작성하며 다수부처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에서 취합하여 작성한다.

나. 답변서형식

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각 부처의 장이 서명한다.

다 . 결재권자

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관 또는 국무총리 전결과 대통령결재의 경우로 구분한다.

(1) 대상부처의 장이 전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(2) 질문내용이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무부처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무총리 전결로 처리한다.
- (3) 중요정책 결정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

라. 공문시행명의 및 부서

대통령 명의로 시행하되, 대통령 결재의 경우에는 시행문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

3 . 행정사항

가. 답변서의 시행시에는 국무총리실에 사본1부를 제출한다.

나. 국회서면질문서처리요령(88.7.25,의정0103- 986)은 폐기한다.

[별지 서식]

답 변 서

▲ 질문의원 : 의원

▲ 근 거 : 「국회법」 제122조

▲ 질문내용

○ 답 변 : 국무총리(장관)

○ 답변내용